

2026년 제2차 농지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서 근무할 농지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8. 31.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장

1. 채용내용

○ 채용분야 등

업무명	채용분야	담당업무	근무예정지	모집인원(명)
농지전수조사 업무보조	농지조사원	- 농지전수조사 관련 업무 보조 (농지현장조사, 시스템 입력, 보완조사, 자료검토 등) - 기타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	대구광역시 (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영직불팀)	1명

* 계약(근무)기간: 2026. 9. 14. ~ 12. 26.(약 3.4개월)

* 채용기간은 예산범위, 업무여건 등의 사정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

○ 근무예정지역(장소) 및 모집인원 등

근무예정지역	모집인원(명)	근무예정장소
대구광역시	1	농관원 경북지원 경영직불팀* * 주소: 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 76

2. 채용요건

○ 채용계약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며,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채용기관 관내 (인접 시·군* 포함) 거주자

* 다만, 인접 시·군 거주자는 출퇴근, 직무수행 등에 영향이 없는 경우 가능

○ 채용 계약일을 기준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및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

○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성실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

< 우대조건 > : 심사 시 가점부여

- 농업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체 종사 / 통계조사 등 공공기관 행정조사 경력자
- 농업 관련 고등학교·대학(전공) 졸업(예정자)
- 직무(전산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) 관련 자격증 보유자
- 운전면허소지자(자차 이용 가능자)
- 취약계층(장애인 및 저소득층) 및 국가유공자, 다자녀 보육 가구
 - * (장애인)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
 - ** (저소득층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 - *** (국가유공자 등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 - **** 다자녀보육가구: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

항 목	내 용	적용대상	가산점	비 고
국가 유공자	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, 제2호, 제4호에 해당자	서류심사 면접심사	만 점 의 10퍼센트	※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1개 항목의 점수를 적용
	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, 제5호에 해당자	서류심사 면접심사	만 점 의 5퍼센트	
장 애 인	1)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2)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	서류심사 면접심사	만 점 의 5퍼센트	
저소득층	1) 기초생활수급자 2) 차상위계층 3) 한부모가족 세대주	면접심사	만 점 의 5퍼센트	
다 자 녀	다자녀(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)	면접심사	만 점 의 3퍼센트	

3. 근무조건 등

- 신분: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
- 계약기간: 2026년 9월 14일 ~ 2026년 12월 26일
 - * 계약기간은 채용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보수: 월급 2,560,000원(산출기준: 생활임금수준)

- 현장조사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출장비 지급
- 근무시간: 주 5일, 1일 8시간(09:00~18:00, 휴게시간 1시간 포함)
- 후생복지: 4대 보험(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) 가입

4. 공고 및 원서접수

가. 채용공고 및 접수기간: 2026. 8. 31.(월) ~ 2026. 9. 4.(금) 18:00

* 토, 일요일,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,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

나. 접수방법: 방문(인편) 또는 우편접수

* 우편 접수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우편접수 사실을 고지

다. 접수장소

채용분야	모집인원	근무예정부서(접수장소)	우편번호	비고(연락처)
농지조사원	1	농관원 경북지원 경영직불팀* * 주소: 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 76	41423	053-320-5253

5. 제출서류

- 지원신청서 1부(소정양식 붙임,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)(필수)
- 주민등록등본(가족, 동거인 제외 응시자만 기재된 등본)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(필수)
- 자기소개서 1부(소정양식 붙임)(필수)
-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 1부(필수)
- 친·인척 재직 여부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 1부(해당 시 친·인척용 개인 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포함)(필수)
- 관련 최종학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관련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- 관련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장애인증명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취약 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
-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 - *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가점을 받은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 1부 * 다자녀 보육가구인 경우

6. 심사방법 및 일정

가. 1차 심사: 서류심사(2026. 9. 7.(월), 예정)

-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: 2026. 9. 8.(화)
 - 개별통보 및 농관원 홈페이지(www.naqs.go.kr)에 면접일정·장소 등 게재

나. 2차 심사: 면접심사(서류심사 합격자 통보 시, 면접일정·장소 통보)

-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,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증
- 다. 최종합격자 발표: 2026. 9. 11.(금) 예정, 개별통보 및 농관원 홈페이지 공고

7. 유의사항

- 지원신청서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,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지원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합니다.
- 응시인원과 관계없이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안내
 -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-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-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*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- * 제출 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.
-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영직불팀(☎ 053-320-5253)

지 원 신 청 서

응시분야 / 지역: 농지조사원 / 대구	※접수번호 :
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

인 적 사 항	성명	한 글		생년월일		성별	
		한 자					
	주 소		(우: -)				
	연락처		(자택전화) (휴대폰)				
	e-Mail						
	우대사항		☐ 국가유공자 ☐ 장애인 ☐ 저소득층 ☐ 다자녀 보육 ☐ 농업관련 또는 통계조사 등 행정조사 관련 공공기관, 기업체 경력 ☐ 농업관련 전공자(졸업예정자) ☐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자 ☐ 운전면허 소지자(☐ 차량소유, ☐ 운전가능, ☐ 운전불가) * 해당부분 모두 체크				
가산점							

교 육 사 항	교육구분		학과명(전공명)	※작성대상: 농업고등학교, 농업대학 및 농업관련학 (관련 계통) 졸업자
	☐ 농업계열 학교 ☐ 관련학과			
	☐ 농업계열 학교 ☐ 관련학과			

경 력 사 항	직 장 명	근 무 기 간	근무부서	담당업무	퇴직사유

자 격	자 격 명	취득일자	발급기관	자 격 명	취득일자	발급기관

우 대 사 항	우대사항(관련번호)	발급일자	발급기관	우대사항(관련번호)	발급일자	발급기관

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.	
2026년 월 일	
작성자 :	(서명)

지원신청서 작성요령

1. 지원신청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자필 또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
2. 지원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신청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.
3. 『지원신청서』는 아래의 《작성요령》에 따라 작성함.

《작 성 요 령》

- ① 응시분야, 지역: 공고문의 “1. 채용내용”의 ‘채용분야’에 있는 00분야 및 근무 예정지역 기재
예시> 응시분야, 지역: 00분야, 00지역
- ② 주 소: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며,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
- ③ 경 력: 행정기관,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
※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
- ④ 자격: 해당 자격증명을 기재
- ⑤ 우대사항: 농업관련 학력 등 우대 관련 사항 기재

자 기 소 개 서

성 명 :

2026. . .

작성자 ○ ○ ○

○ 작성요령

- 위 양식에 따라 2장 이내로 기술하되, 출신지역, 학교명, 가족관계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관련분야 활동·업적 등이 있으면 요약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글자크기 13p, 줄간격 160%)

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 · 이용 동의서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장 귀하

본인은 귀 기관에 채용지원함에 있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 및 제22조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·이용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□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
- 4대 보험의 신고, 임금·퇴직금 등의 산정과 지급, 경력/자격의 조회 및 채용이력관리, 신원조사 등과 관련된 업무
- 보험사고 조사, 분쟁 해결, 민원 처리 등

□ 수집·이용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

- 개인식별정보: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주소, 전화번호, 계좌번호, e-메일 등 연락처, 자격사항 등
- 개인(신용)정보는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의 종료시점까지 (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)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·이용되며, (계약 종료일)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, 분쟁 해결, 민원 처리, 통계자료 작성,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·이용 됨.
- 지원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(미 채용 시 파기)
- 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3년

※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 년 월 일

지원자 :

(인, 서명)

개인(신용)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장 귀하

본인은 귀 기관에 채용지원함에 있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5조에 따라 개인(신용)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□ 제공받는 기관 및 목적

- 고용지원센터(워크넷): 중복 취업여부 확인 등
- 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관리공단, 고용센터 등: 4대 보험(건강, 고용, 산재 보험, 국민연금) 가입
- 농협 등 금융기관: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·적립
- 경찰서 및 지자체: 신원조사, 신원조회 등

□ 제공의 법적근거

- 근로기준법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등

□ 제공되는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

-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, 계좌번호 등
- 개인(신용)정보는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의 종료시점까지 (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) 위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제공되며, (계약 종료일)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, 분쟁 해결, 민원 처리, 통계자료 작성,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·이용 됨.
- 지원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(미 채용 시 파기)
- 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3년

※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 년 월 일

지원자 :

(인, 서명)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-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(기간제 포함),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-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(채용, 공공근로)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----- ☒ 있음 ☐ 없음 ☐

※ 공직자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

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

2. ‘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’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
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중, 퇴직후 불문)

※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

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
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※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 → 부패행위 비해당
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 → 부패행위 해당

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

3-2. 현재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)
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)

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
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)

4-3. 권익위법(‘16.3.29. 제14145호로 개정된 것) 시행(‘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
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
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 해당 여부 ----- ☒ 해당 ☐ 비해당 ☐
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 해당 여부 ----- ☒ 해당 ☐ 비해당 ☐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(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)

20 년 월 일

지 원 자

(서명)

친·인척 재직 여부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-신규 직원 지원자(기간제)작성용

「고용노동부」는 『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(2018. 11. 1.)』, 『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추가지침(2019. 12. 13.)』을 시달하여 채용비리가 방지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바, 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」 채용에 지원 시 지원자의 친·인척이 우리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* 친·인척의 재직 여부 ----- ☒ 있음 ☐ 없음 ☐ ※ 친·인척과의 관계(있음 체크한 경우) : 친
* 친·인척 인적사항(있을 경우 작성) 가. 성 명 : 나. 생년월일 : 다. 근무부서 : 라. 직 위 : ※ 근로자는 해당되는 친·인척에게 별첨의 ‘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(친·인척용)’를 징구하여 본 서류와 함께 제출
<u>상기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, 본인은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 시 채용기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</u> <u>또한,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합격취소 또는 당연면직·해고 등으로 처리되며,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,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 결과에 따라 합격취소 또는 당연면직·해고 등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</u>
※ 해당 정보는 면접위원 제척·기피, 채용비리 방지·조사를 위해서만 사용될 뿐 심사 자료로는 쓰이지 않으며, 심사 결과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.

별첨 :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(친·인척용)

일

지 원 자

(서명)

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(친·인척용)

본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이하 '채용기관'이라 함)의 채용 모집에 지원한 000의 친·인척으로서 '개인정보 보호법'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'개인정보 보호법'에 따라 채용기관이 수집 및 이용,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.

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.

년 월 일

□ 친·인척 본인

▪ 성 명 (서명)

▪ 생년월일

▪ 직장전화

▪ 부 서

▪ 직 위

귀하

인사검증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
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목적(채용기관) : 채용 심사위원 등의 제척·기피제 운영, 채용비리 여부 조사
* 동의한 개인정보를 통하여 채용기관, 제3자 등이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음
-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 - 개인정보(필수사항) : 성명, 생년월일, 직장전화, 부서, 직위---동의□ 비동의□
 - 상기 동의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---동의□ 비동의□
-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
 - (불합격자의 친·인척) '채용절차법'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·파기할 때까지 보관
 - (합격자의 친·인척) 노무관리자료로 보존(해당 근로자의 재직기간)
-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 친·인척에 해당하는 지원자의 응시 원서 접수 제한 및 계약 거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※ 친·인척 재직 여부 관련 체크리스트에 재직 있음 체크한 경우 작성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
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